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735
----------	-----

발의일자 : 2009. 4. 2 .  
발 의 자 : 광진수의원 외 3인

## 1. 개정이유

○ 본 조례의 근거 법령 중 “수질환경보전법”이 2007.5.17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률명 변경 등이 필요

## 2. 주요내용

○ 제1조중 “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·진동규제법”을 “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”으로 한다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 중 “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·진동규제  
법”을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 
법률」 및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《신·구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.....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..... ..... ..... ..... .....